

조달물자 납품검사제도

제도, 절차, FAQ



조달품질원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울곡동)

Tel. 1588-0800 / 054-716-8123, 8125, 8129 Fax. 054-716-8157



조달품질원

개요 및 목적

조달청 검사공무원 등이 지정된 검사 현장을 방문, 관능검사 및 이화학 시험을 실시해 규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조달물자가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 도모

* '21년 검사실적 : 총 12,328건(조달청 검사 3,170건 + 전문기관 검사 9,158건)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조달청 지침](#)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조달품질원 공고](#)
-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조달청 훈령](#)
-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조달품질원 공고](#)

검사의 종류

1. 검사기관에 따른 구분

조달청 검사 **»»** **»** 조달청 공무원이 지정된 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 대상에 대하여 관능검사 및 시료를 채취한 후 이화학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
대상 품명 가구류, 섬유류, 지류, 금속제 울타리, 합성목재, PVC·PE관류, 친환경 제설제 총 7개 품류 55개 품명

전문기관 검사 **»»** **»**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담당자가 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 실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21개 기관 ('22.3월 기준,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대상 품명 기계류, 수도관류, 조명제어장치 등 608개 품명



2. 검사시기에 따른 구분

중간검사 **»**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재료,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

-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달 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주요 제조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완제품 상태에서는 사용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등에는 중간검사 가능
- » 사용재료를 검사할 때에는 소요 원·부자재 전량이 확보된 후 검사하여야 하며, 납품검사 관련 규정 준용

참고 합동검사

- 원·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와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
- 납품검사 이전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이화학 시험이 필수적인 경우(섬유류에 한함)와 계약서 상 검사 기관이 합동검사로 지정된 경우 실시
- 관련 규정 :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조의2 (합동검사)

납품검사 **»** 납품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

- » 조달청 검사 공무원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이화학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

재검사 **»** 검사 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

- » 당초 불합격 물품을 보수, 개조, 선별하거나, 최초 물품을 재생산하여 다시 검사하는 것

검사 실시 주기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및 기간 조건이 충족되는 납품요구 건에 대해 검사 실시
»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포함)에서 동일한 품명(8자리)의 납품요구금액 누적

1. 검사 주기 조정

연장 **»»** **»**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동일한 계약번호 안에서 조달물자 검사 2회 이상 연속 합격한 품명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적용(다만, 중간검사 합격과 불합격 이후 재검사 합격, 감가 조건부 합격은 횟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단축 **»»** **»** 조달물자 검사 불합격 시 주기 단축, 차기 검사 기준 금액 축소

2. 기준 금액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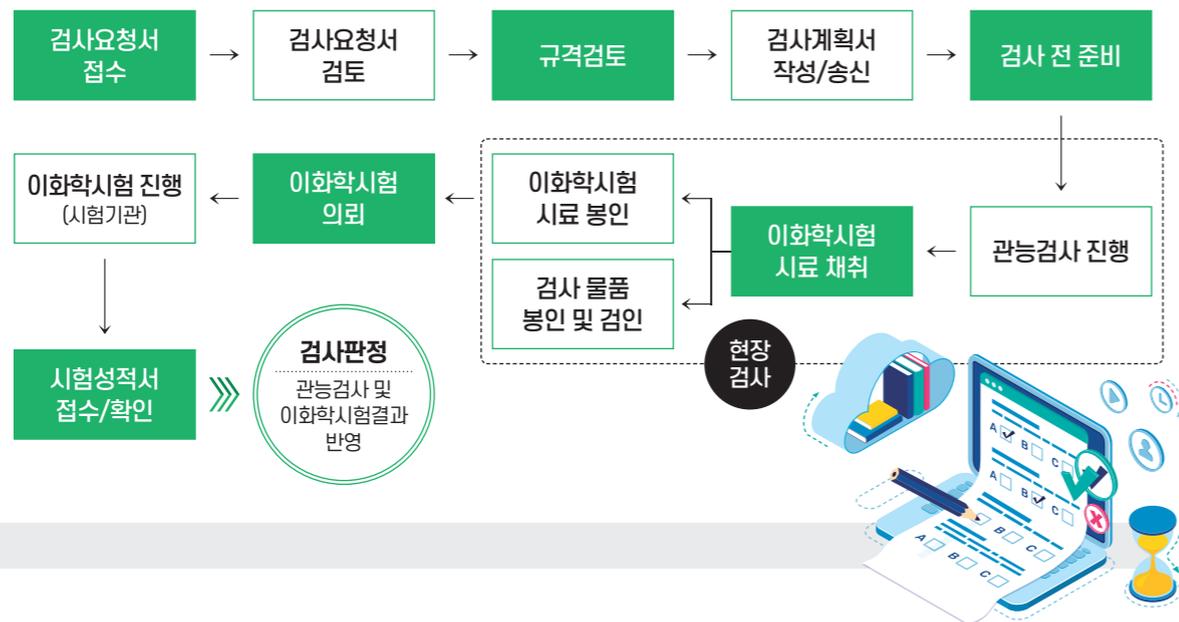
📅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품명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기준 금액의 상향 또는 하향 품명을 확정

🐜 조정된 기준금액은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 건부터 적용

물품명	최초검사		차기검사 (최초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60일 경과)	
	0그룹	납품요구 누적금액	5천만원 이상	납품요구 누적금액
1그룹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품명별 불합격률에 따라 2억원, 5억원으로 조정될 수 있음	
2그룹	2억원 이상			
3그룹	3억원 이상			
4그룹	4억원 이상			
친환경 제설제	계약 후 사전검사 실시			

※ 그룹별 물품 목록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별표3] 참고

검사 진행 절차



불합격 후속조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조의 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부 품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및 2단계 경쟁 시 감점 조치



1. 불합격품의 처리

👉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 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상대자 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불합격 횟수	결함 종류	거래정지 기간	기준
1회 불합격	경 결함	경고	동일 계약번호 내,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세부품명별 불합격 횟수 누적
	중 결함	1개월	
	치명 결함	3개월	
2회 불합격	경 결함	1개월	
	중 결함	3개월	
	치명 결함	6개월	
3회 불합격	경 결함	2개월	
	중 결함	6개월	
	치명 결함	12개월	

※ 단, 동일 납품 요구 건에 대해 재검사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하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조의2에 따름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감점 조치

평가 지표	결함 종류	기준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결함이 없는 경우	배점 × 1
	경결함 1회	배점 × 0.8
	중 · 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또는 중 · 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또는 중 · 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21-5호)」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1항에 따라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로 평가

4.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23조(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에 따라 **확인 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3의 기관의 장을 통해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검사결과를 확정**

자주 묻는 질문

- Q 1**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계약(총액, MAS)을 수요기관 검사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총액계약은 수요기관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수요기관 검사로 바꾸려면 계약부서로 요청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가계약의 납품요구 건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 4(검사기관 변경) 및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4조의 2(검사기관의 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수요기관에서 검사기관 변경을 요청한 경우 가능하며, 수요기관 계약부서에서 내부결재 공문과 수요기관 자체 검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상단 참고 **e-고객센터** → **사용자 설명서** → **납품요구검사기관 변경 전산화 이용 매뉴얼**
- Q 2** 검사 대상 물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달청검사 대상은 [별표1], 전문기관검사대상은 [별표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정보제공 →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3** 검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지 않나요?

A 검사 소요일수는 물품의 특성, 수량, 이화학 시험 기간 등에 의해 결정결정되며, 검사기관에서 예상소요일수를 기재한 검사계획서를 검사요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하며, 수요기관의 일정과 계약상대자의 생산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 Q 4** 검사기관 변경 요청 시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자체 검사계획서를 조달품질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검사기관을 수요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실 자체 검사계획서에는 검사담당자, 검사항목(실제로 담당자가 확인할 내용), 검사일자, 시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체 규격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Q 5** 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 이후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불합격 결과 접수 후 거래정지 예정 통보 및 의견청취안내 공문이 계약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공문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되고, 의견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공문으로 다시 통지합니다.
- Q 6** 불합격품 봉인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선별하여 납품이 가능할 경우 봉인해제 승인을 요청하시면 되고, 보수, 개조, 선별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품 전량을 재생산해야 하며 대체 납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체 납품검사의 경우, 검사 수준을 당초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검사 합격 및 납품 완료 후 봉인된 불합격품에 대해 봉인해제 요청 및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Q 7** 검사 도중에 납품요구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달물자 검사 완료(검사결과서 송신 시점) 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유효하나, 검사 완료 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Q 8** 인증을 받았는데 납품검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

A 인증 검사와 납품 검사는 목적이 다르고, 인증을 취득한 물품 중에서도 불합격이 발생하는 등 인증 보유만으로 계약 시 요구된 품질 및 성능이 유지된다고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납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Q 9** 검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A 우리 원에서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납품검사 면제 가능 제품(KS인증 제품,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납품검사 면제 제도'와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 능력 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을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 선정 등 세부 기준은 조달품질원 공고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Q 10** 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A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에 의거 검사요청시기 및 합격 여부에 따라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지며, **납품기한 전에 검사 신청을 하고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검사 및 검수)5항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0조(지체상금)를 참고하여 조달청 계약 및 납품요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11** 지정된 전문검사기관 다른 전문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품명을 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을 확인(「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참고)하신 후, 검사 가능한 타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납품요구번호, 당초 검사기관, 변경 검사기관 등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조달품질원 납품검사 담당자에게 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면 변경 가능합니다.